대티역 스마트 V 인공지능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의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자 본인에게 책임이만으로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안내

- 본 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신청 이전에 인터넷 병령기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이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6.12.30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에 따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개정시행일 : 2017.1.1.)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3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지역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는 물론 이와 인접한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단, 동일순위 청약자에게는 일반공급 대상 모두 포함등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5조 3항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또한,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자격에 1년 이상 가입한 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m²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추첨제」 가 적용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청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2017. 09.20.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건전한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청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인정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건전한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2017. 9. 20 이후 모집공고 승인분은 인정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건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주택에 당첨일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공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건전간 다른 주택의 가점제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개별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계	최하층 배정 세대
민영주택	2017001473-01	084.9950A	84A	84.9950	28.4352	113.4302	23.2968	136.7270	12.7390	3	3	3	1	26	36	2
	2017001473-02	084.9950B	84B	84.9950	28.4352	113.4302	23.2968	136.7270	12.7390	3	3	3	1	26	36	2

※ 84A-1 TYPE : 세대수 1, 전용면적 84.9950㎡, 공용면적 28.4351㎡, 세대별공급면적계 113.4301㎡, 기타공용면적 23.2973㎡, 계약면적 136.7274㎡, 대지지분 12.741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타입	동 · 라인	층 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대지비	건물비	계	계약금(10%) 1차 계약 시	2차 2017.12.15	중도금(60%) 1차 2018.02.15	2차 2018.05.15	3차 2018.08.15	4차 2018.11.15	5차 2019.02.15	6차 2019.05.15	잔금(30%) 입주 지정일
84A	101동 1,4호	3	2	161,840,000	242,760,000	404,6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4,600,000
		4	2	163,200,000	244,800,000	408,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8,000,000
		5	2	164,600,000	246,900,000	411,5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4,500,000
		6	2	165,960,000	248,940,000	414,9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7,900,000
		7	2	167,320,000	250,980,000	418,3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31,300,000
		8~10	6	168,000,000	252,000,000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11~20	20	169,400,000	254,100,000	423,5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9,500,000
84B	101동 2,3호	3	2	161,840,000	242,760,000	404,6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4,600,000
		4	2	163,200,000	244,800,000	408,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8,000,000
		5	2	164,600,000	246,900,000	411,5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4,500,000
		6	2	165,960,000	248,940,000	414,9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27,900,000
		7	2	167,320,000	250,980,000	418,300,000	10,000,000	3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41,000,000	131,300,000
		8~10	6	168,000,000	252,000,000	420,0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6,000,000
		11~20	20	169,400,000	254,100,000	423,500,000	10,000,000	3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42,000,000	129,50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통사항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별 등을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등기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개인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인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지 않습니다.
- 주거면이상로 제공 예정인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키즈테라피룸(북카페등룸), GX룸은 부대복리시설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인지 내 상가입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래표인 경우 천체공사비(부대시설비포함)를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월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분기 로 합니다.(이 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분양 중도금은 당 사업주체의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이신청자의 본인의 대출 부적격 사유로 인해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분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30조에 의거 입주지정고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공급금의 10%를 제외 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는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일의 불출일자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일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금액내용은 시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80조)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청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비율으로 하였으며, 정확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업주체가 정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보지자산건축물 포함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일보다 실입주일이 앞서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지정고지 상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전과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할 날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은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및 은행창구 등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입력한대로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자격기록, 가주거사항,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일 및 당첨일로부터 전산관리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순위 포함 청약을 제한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특별공급
1) 공동사항
- 신청 일시 및 장소

신청자격	신청일자	신청장소	당첨자 선정일시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017.11.01.(수) 10:00~15:00	대티역스마트뷰 인공지능 분양사무실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	• 일시 : 2017.11.01.(수) 16:00 • 장소 : 대티역스마트뷰 인공지능분양사무실

※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과다로 사무실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일시가 지연 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가 대티역스마트뷰 인공지능 분양사무실 방문 신청
※ 당첨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일절 응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업주체는 특별공급 당첨자명단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등 · 호수 배정은 공동공제위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입주자선정프로그램에 의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및 일제 특별공급 등 · 호수 배정 결과 발표)
※ 특별공급 추첨소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해당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40조에 해당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41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46조에 해당하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합니다.
※ 공급수량 이상으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 신청자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시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 접수 시 입주자모집공고 확인과 접수하는 것은 아니며, 기재된 내용에 오기 · 누락 · 착오 등이 있을 경우 시업주체는 우선해,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 신청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는 일반공급에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 당첨된 경우는 특별공급 주택에 당첨된 것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로 하고, 특별공급 신청 미달 시 전매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적정한 주택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을 선택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주택을 2개 이상 기재하는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일반공급 청약 기회의 인정을 받은 자보다, 철가주택 소유자 특별공급대상자는 무주택세대원 구성원 여부와 상관없이
※ 중소기업근로자, 관련법에 의한 장기복무 군인, 북한이탈주민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급세대 :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로 총 6세대
- 당첨자 선정방식 : 청약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은 추첨에 의하여 관계기관장이 정하는 우선순위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자 공급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호(2016.12.13)에 따라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6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무주택세대주(미혼양자녀 이외의 자녀 포함)
※ 주소가 2016년 7월 1일 이후 부산지역으로 이전된 것은 본양주택의 2016년 7월 1일 발표 된 광역정책 "분양권요청 및 중도금 대출 보증제 개선" 에 따른 1인당 중도금대출 보증 건 수 및 보증 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서류 수수료(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기록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른 중도금만큼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가간 이 지난 후 분양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일의 불출일자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입일이 토 ·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은행의 익일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금액내용은 시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주택법 시행령」 제80조)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청별 계약면적 비율에 따른 배분비율으로 하였으며, 정확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숫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업주체가 정해져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보지자산건축물 포함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예정일보다 실입주일이 앞서게 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사업주체가 지정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 납부 및 입주를 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지정고지 상 입주예정일과 무관하게 실입주지정기간전과 납부기간 경과 후 잔금을 납부할 날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은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순위별로 접수받아 동 · 호수를 추첨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구분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합니다.
- 당첨자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 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 시 인터넷 및 은행창구 등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자가 입력한대로 주택공급신청서 상에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자격기록, 가주거사항, 무주택기간, 주택소유여부, 가점별 적용기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전적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며, 청약자격과 관련하여 착오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일 및 당첨일로부터 전산관리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피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1순위무주택 우선공급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주택의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건전간 다른 주택의 가점제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타입	세대별 개별면적(㎡)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일반공급	계	최하층 배정 세대
계																
미생존 자녀수(1)	5			미생존 자녀 4명 이상						자녀의신청에 있는 태아 및 입양이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생존자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등본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15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0			무주택기간 5년 미만												
해당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15			5년 이상~10년 미만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 도로 봄						
	5			1년 이상~5년 미만												
	1			1년 미만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5년 이상~10년 미만												
				유의사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온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5) : 입주자저축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하나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오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2016.12.13)에 따릅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6년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날짜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미혼양자녀 이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정)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자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
- 공급세대 : 주택 건설량의 3% 범위 이내로 총 2세대
- 무주택세대주 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함.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호 미적용)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거나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 추첨의 방법에 의해 결정됩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해당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는 없으므로 일반공급용 청약가점 산정기준 표를 작성토록 합니다.(접수창소 비치)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표의 점수가 본인이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73(2016.12.13)에 따릅니다.

■ 특별공급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세류유형 필수	추가(해당자)	해당세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창소에 비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등본 발급 요함
	○		주민등록표 초본	본인	상기 등본상 표기사항인으로 당해세대 가주기간, 세대주기간 등 입증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세대분리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단독세대 및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제3자 대리 신청시	○		위임장	본인	접수창소에 비치
	○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신분증(대리인 및 인장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지참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증서	본인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청약인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청약인증명서 등으로만 가능

구분	순위	신청구분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증명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 주택형	○	○	○	○	○	3세대 이상 배우자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 등본 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3년이상 부양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	○			배우자 및 자녀 이외의 친부 또는 양부가 본인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증서				접수창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외자에 한함	
			○	친부모가족증명서				어린이집부모 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원된 경우된 경우	
		○		혼인신고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해당부자,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만19세 이상의 세대주의 직계존 · 비속 전원	
		○	제직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서					접수창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자녀 출생일자 관련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증서					접수창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외자에 한함	
		○	제직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서					접수창소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자녀 출생일자 관련 사항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제출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하여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증서					접수창소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외자에 한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주와 피부양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6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만19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여부", "주소변동 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에 대한 표기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상기 사항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시 기재대장범위에 따라 세대 구성 사유, 본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및 자리

※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시 기재대장범위에 따라 발급시 본적 주소 · 주민등록표등본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상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전주택형	100만원	- 인터넷 접수시 : 주택청약 청기은행 본인 계좌에서 자동 인출(청약신청 전 계좌잔액을 100만원 이상 유지) - 은행창구(방문) 접수 시 : 가능한 해당지역 소재 금융기관 방행 지기접수표 1매 준비

※ 주택청약 청기은행 : 기업, 국민, 수협중앙회, 외환,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한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 평일(09